

# 古書의 分類問題 (上)



千 惠 鳳

## 內 容

- 一. 緒言
- 二. 四部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發展해 왔나?
- 三. 四部法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適合

- 한 것인가?
- 四. 現在 우리의 古書分類는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
- 五. 結論

### 一. 緒言

古書의 分類問題에 對하여 質問을 數次 받은 것이 動機가 되어 數個月前부터 서울 都心地의 몇몇 圖書館을 直接 訪問하기도 하고 또 그 圖書館의 實務者와의 間接的인 面談을 通하여 古書整理의 近況 그중에서도 특히 分類體制의 大略을 살펴 본일이 있다. 古書를 比較的時이 所藏하고 또 歷史가 있는 圖書館으로서는 大槪 整理를 하고 있었는데 그 分類法이 四部法, K. D. C. 東洋關係部門을 展開한 D. D. C. 및 獨自案等 圖書館 마다 區區各各임을 알았다. 그리고 比較的 古書의 藏書量이 적은 圖書館에 있어서는 아직 整理를 하지 않고 準備段階에 있는것도 아울러 알았다.

그래서 筆者는 古書整理의 準備段階에 있는 圖書館을 위하여 分類業務上 多少라도 參考가 될만한 몇가지 問題를 捕捉하고 그에 對한 理論과 實際를 或은 古書의 典型的 代表國인 中國에서 或은 圖書館學理論이 先進된 歐美에서 參考하고 綜合하여 여러분과 같이 眞摯하게 檢討하고 싶은 마음에서 펜을 들게된 것이다. 그러므로

로 古書整理에 造詣나 關心을 갖고 있는 분은 勿論이요 古書整理의 準備計劃을 하고 있는 實務者 여러분들의 檢討와 添劑로 보다더 充實하고 發展的인 段階로 이끌어 나아가주시기 바라는 마음懇切하다.

### 二. 四部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發展해 왔나?

四部法을 簡單히 말하면 四個의 主要部門을 經·史·子·集으로 配當하고 이를 다시 類(綱)目으로 區分한 分類인 것이다. 이 四部法은 在來의 東洋分類法中 가장 傳統的인 것으로서 圖書館人和 所藏者들이 尤大한 漢籍을 整理하는데 주로 使用해왔다. 뿐만아니라 古典을 研究하는 學者들이 東洋學研究의 入門으로서 先習하여야 할 目錄學 및 書誌學으로서의 구실도 또한 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分類法은 그 採用與否를 云謂하기 앞서 于先 우리 圖書館人 특히 東書의 分類와 目錄을 다루는 사람이나 參考業務를 맡아보는 사람들도 만드시 이허두어야 할 하나의 學問인 것이다.

中國에 있어서 分類法을 始創한것은 劉

歐이가 그의 아버지인 劉向의 뜻을 이어 完成시킨 七略이라한다.

漢書藝文志序(註1)에

『至成帝時 以書頗散亡 使謁者陳農求遺書於天下 詔光祿大夫劉向校經傳 諸子 詩賦 步兵校尉任宏校兵書 太史令尹威校數術 侍醫李柱國校方技 每一書已 向輒條其篇目 撮其旨意 錄而奏之 會向卒 哀帝復使向子侍中奉車都尉歆卒父業』

이라하고 또

梁 阮孝緒의 七錄序(註2)에

『昔劉向校書 輒爲一錄 論其指歸 辨其訛謬 隨竟奏上 皆載在本書 時又別集衆錄 謂之別錄 卽今之別錄是也 子歆撮其旨要 著爲七略』

이라 記錄되어 있듯이 秦始皇帝의 焚書로 圖書의 散亡이 甚해서 成帝時(B.C. 26)에 遺書를 天下에 求하고 劉向이 이를 校하여 一書를 編撰한바 있었으며 또 그 때에 別集으로 整理한것도 있었으니 이別集이 곧 劉向의 別錄이고, 七略은 그의 아들인 劉歆이 父業을 이어 다시 그遺稿를 整理하고 分類體制를 갖춘 書目이라는 것을 알수가 있다.

七略의 部門內容은

漢書藝文志序에

『歆於是 總覽書而奏 其七略 故有輯略 有六藝略 有諸子略 有詩賦略 有兵書略 有術數略 有方技略 今刪其要 以備篇籍』

이라 記錄되어 있는바와 같이 七個部門으로 區分되어 있으나 現在는 亡佚되어 傳來되지 않음으로 다만 上記의 漢書藝文志를 비롯한 諸文獻에서 그大綱을 窺知할수 있을 뿐이다.

이 七略 다음에 漢籍을 分類하는데 使

用된것이 바로 四部法으로서 그嚆矢는 晋初에 荀勗이 編撰한 新簿에 依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新簿는

隋書經籍志(註3)에

『魏秘書郎 鄭默 始制中經 秘書監 荀勗 又因中經 更著新簿 分爲四部 總括羣經』

이라하고 또

七錄序에

『晉領秘書監 荀勗 因魏中經 更新簿 分爲十有餘卷 而總以四部之』

라 記錄되어 있듯이 元來 魏의 鄭默(字 思玄 秘書郎)이 編撰한 中經簿를 根據로 更新하고 完成시킨것임을 알수가 있다.

新簿의 四部內容은 隋書經籍志에 依하면

『新簿分爲四部 總括羣書 一曰 甲部 紀六藝及小學等書 二曰 乙部 有古諸子家 近世子家 兵書兵家 術數 三曰 丙部 有史記 舊事 皇覽簿 雜事 四曰 丁部 有詩賦 圖譜 汲冢書 大凡 四部合二萬九千五百四十五卷』

이라되어 있다. 이 甲乙丙丁은 書籍의 部類를 稱하는것이 아니고 다만 書目記錄上의 順序表示에 不過하며 七略(漢書藝文志)에는 輯略이 없고 六略으로 되어 있음(註5)에서 經·史·子·集의 四部法에 이르는 過渡的인 性質을 眼點에서 特히 注目할만한 것이다.

四部의 名稱이 비록 荀勗의 中經簿에 依해서 始創되었다 하더라도 今日 우리가 보는 經·史·子·集과 같은 四部의 次序는 東晉初 季充의 晋元帝書目에서 定해진 것이다.

隋書經籍志에는

『惠懷之亂 京華蕩覆 梁園文籍 靡有子遺 東晉之初 漸更鳩聚 著作郎 季充

以荀勗校之 其見存者 但有三千一十

四卷 充遂總沒衆篇名 但以甲乙爲次』

라하여 東晉初 李充이 晉末 惠·懷의 亂으로 또 다시 散佚된 書籍을 蒐錄하여 荀勗의 中經新薄와 校合時는 不過 3014卷밖에 現存치않아 衆篇名을 列擧치 않고 다만 甲乙로서 次序를 表示했다고 너무나 簡單한 記錄으로 這問의 消息을 傳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清 錢大昕의 元史藝文志에서 本撰者가 言及한바를 빌려 詳言한다면

『晉荀勗撰 中經薄 始分甲乙丙丁四部 而子猶先於史 至李充爲著作郎 重分四部 五經爲甲部 史記爲乙部 諸子爲丙部 詩賦爲丁部 而經史子集之次始定』

이라 하듯이 中經新薄가 乙部를 古諸子家 丙部를 史記로하여 子를 史앞에 두었음에 反하여 李充이 編撰한 書目에는 史記를 乙部에, 諸子를 丙部에 分入함으로서 史部를 子部앞에 두었다. 비록 當時는 經史·子·集이란 名稱을 쓰지는 않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次序가 여기서 비로소 定해지는데 對해서는 그意義가 매우 크다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四部法의 先驅가 鄭默 荀勗에 依해서 이루어지고 李充에 依해서는 비록 經·史·子·集의 名稱은 붙이지 못했다하더라도 그四部의 次序를 定했다함은 이미 言及한바와 같거니와, 이 四部의 名稱이 定된것은 그後 唐代에서 撰述한 隋書經籍志에 이르러 이루어진것이다.

이와같이 隋書經籍志에 이르러 四部法의 次序와 名稱이 現在와 같이 確立된 以後는 中國의 各史 藝文志와 經籍志<sup>(註6)</sup>를 비롯하여 唐의 羣書四錄, 宋의 崇文總目, 淸의 四庫全書總目과 같은 官修目錄과 晁公武의 郡齋讀書志, 尤袤의 遂初堂書目, 陳

振孫의 直齋書錄解題, 朱睦㮮의 萬卷堂書目, 祁承燾의 淡生堂書目, 黃虞稷의 千頃堂書目 및 馬端臨의 文獻通考經籍考 등과 같은 私家目錄에서 까지 널리 踏襲되어 이른바 隋志 以後 圖書整理上의 規範을 이루고있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中國에 있어서의 圖書整理는 이 四部法에 依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四部法 以外도 七部法이 있어 前記한바와 같이 劉氏에 依해서 七略이 始創된 以後 漢末까지 官修目錄에서 主用되었으며, 그後는 四部法이 魏에서 始創되고 晉에서 杜士臺가 定해짐에 따라 衰落하여 가는 狀態에 있었으나 그러나 宋 齊 梁 陳를 거처 隋에 이르기까지 四部法과 競爭의인 位置에 놓이면서 併用되어 왔다. 中 主要한것을 列擧하면 七略을 倣하여 編撰한 宋 王儉의 七志, 梁 阮孝緒의 七錄, 및 隋 許善心的 七林等이 있다. 淸外에도 南宋 鄭樵의 通志藝文略에서 使用되고 있는 十二部法 같은 分類法等도 있었으나 그다지 普及되고 傳來되지 못하였으며 오직 이四部法만이 傳統을 이으며 主用되어 왔다. 그러나 이四部法도 隋書經籍志에서 그次序와 名稱이 共히 確定된 以來 一定한 體制를 踏襲해온것이 아니라 類(綱)目的 名稱 排列 및 內容의 詳略에 多少의 變動과 增減이 行하여지면서 淸代의 四庫全書總目的 分類體制에 이르러 그鼎盛期를 이루었던 것이다.

四庫全書總目은 淸의 乾隆 38年에서 47年(1774—1782)까지 10年間에 걸쳐 編纂한 一大中國書籍의 目錄으로서 紀的 陸錫熊等 總纂官을 비롯한 在職者 360名 批苻 1500名이 걸려 完成하였다. 總計存書 3457部 79070卷, 存目 6766部 93556卷, 分裝 3600冊 6752函이며, 이를 7部 分寫하여

(註8) (註9)  
 內廷四閣과 江浙三閣에 各各 一部를 保存  
 하였다. 따라 이 四庫全書總目의 四部法은  
 그 어느것보다도 가장 詳細히 細目까지  
 展開되어 있는것으로 그大綱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經部

- 易類
- 書類
- 詩類
- 禮類
  - 周禮 儀禮 禮記 三禮通義
  - 通禮 雜禮
- 春秋類
- 孝經類
- 五經總義類
- 四書類
- 樂類
- 小學類
  - 訓詁 字書 韻書

史部

- 正史類
- 編年類
- 紀事本末類
- 別史類
- 雜史類
- 詔令奏議類
  - 詔令 奏議
- 傳記類
  - 聖賢 名人 總錄 雜錄 別錄
- 史鈔類
- 載記類
- 時令類
- 地理類
  - 總志 都會 郡縣 河渠 邊防 山川 古蹟 雜記 遊記 外記

- 職官類
  - 官制 官箴
- 政書類
  - 通制 典禮 邦計 軍政法
  - 令 考工
- 目錄類
  - 經籍 金石
- 史評類

子部

- 儒家類
- 兵家類
- 法家類
- 農家類
- 醫家類
- 天文算法類
  - 推步 算數(書)
- 術數類
  - 數學 占候 相宅 相筮 占卜 命書 相書 陰陽五行
- 藝術類
  - 書畫 琴譜 篆刻 雜技
- 譜錄類
  - 器用 食譜 草木鳥獸蟲魚
- 雜家類
  - 雜學 雜考 雜說 雜品 雜纂 雜編
- 類書類
- 小說家類
  - 雜事 異聞 瑣語

- 釋道家類
- 釋道家類

集部

- 楚辭類
- 別集類
- 總集類
  - 詩文評類
  - 詞曲類
    - 詞集 詞選 詞話 詞譜詞韻 南北曲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中國에서와 같이 盛行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일찍이 이 四部法이 導入되어 使用되어 왔다. 現在 우리가 손쉽게 얻어 볼수있는 것중 筆者가 寓目한 것으로서는 徐有鑾(英正朝人)撰인 鏤板考<sup>(註10)</sup>를 들수있다. 이것은 書冊目錄이 아니고 冊板目錄으로서 冊板名을 四部法에 따라 分類하고 撰者 所藏地 印紙의 牒帳數와 簡單한 解題를 붙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하나들것은 奎章閣總目이다. 李朝王室圖書館에 所藏된 圖書目錄으로서 現在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에 移藏保存되어 있으며 四部法에 따라 分類되고 解題가 붙어 있다. 解題에 添削을 加하여야 할 곳이 적지 않다는 世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이 奎章閣總目이 가장 많은 漢籍을 包括하고 있으며 또 그 分類法도 詳細하여 圖書館人은 勿論이요 學者들이 恒常 座右에 놓고 參考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외에도 若干의 例를 더 들수있으나 奎章閣總目에 빈하면 매우 粗略하고 大端치 않음으로 이程度로 紹介하겠다.

註 1. 班固, 前漢書 卷三十 藝文志第十

註 2. 許世瑛, 中國目錄學史(民國43), P. 18—33.

註 3. 無忌, 隋書 卷三十三 志 第二十七 經籍一經.

註 4. 內府書目.

註 5. 前漢書 卷三十 藝文志 第十 『輯略』에 對한 顏師古注에 『輯與集同 謂諸書之總要』라하고 또 七錄序에 『子欲盡其指要, 著爲七略 其一篇即六篇之總最 故以輯略爲名』이라하듯이 輯略은 六略의 總序及 總目이며 個別的인 하나의 書目이 아님을 可히 推知할 수 있음.

註 6. 蔣元卿, 中國圖書分類之沿革(民國46) P. 42.

註 7. 中國正史中 藝文志 또는 經籍志가 있는것은 漢書 隋書 舊唐書 新唐書 宋史 明史 清史稿 뿐이다.

註 8. 內廷四閣

(1) 文淵閣 (2) 文溯閣 (3) 文津閣  
(4) 文源閣

註 9. 江浙三閣

(1) 文滙閣 (2) 文宗閣 (3) 文瀾閣

註 10. 徐有鑾, 鏤板考 卷1—7(1冊) 洪命憲 校訂(昭和16)

### 三. 四部法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適合한 것인가?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도 果然 이 四部法을 받아들일수 있겠는가하는 問題를 中心으로 檢討하려한다. 그러나 그方法으로서는 亦是 中國圖書館界에 있어서의 四部法에 對한 諸人士의 批判 및 그 衰落過程을 分析檢討하고 그結果를 우리 圖書館界에 適用시키지 않을수없다. 그理由로서는 四部法이 東洋에서 自古로부터 盛行했던 곳이 中國이요 또한 過去와 現在를 通해서 가장 古書가 豊富한곳이 中國임에도 어찌하여 現在는 大部分의 圖書館이 傳統的인 四部法을 버리고 新分類法으로 轉換되었나하는 問題는 우리에게도 充分히 適用되고도 오히려 남음이있는 檢討資料가 되기 때문이다. 清代에 있어서 그絶頂에 이르렀던 四庫全書總目的 四部法은 또한 同時代에서 漸漸 衰落狀態에로 기우러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清代에 이르러 西洋學術이 流入되기 始作됨에 따라 學界와 思想界는 勿論 圖書館界까지 波及되어 中國分類史上 前例없는 一大變革을 招來케 한데 基因하는 것이다. 四庫全書總目的 分類法이 비록 在來의 것보다 그類(綱)目이 詳細하여 보다는도 龐大한 漢籍을 網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벌써 그當時에 刊行되는 西洋의 學術圖書를 받아들일수 없는 處地였으니 그어찌 四部法에 對한 批判이 續出되지 않으리랴,

(註1)  
蔣元卿은 四庫分類法을 評하여 (1) 是 儒家的 分類法 (2) 分類不以學術爲重 (3) 類目以書之多寡而定 (4) 分類之標準不一致라 하고, 姚名遠은 (1) 是 儒家的 分類法 (2) 是 御用的 分類法 (3) 分類以書籍의 多寡而定 (4) 分類以體以義不一律 (5) 類書列入子類之不妥, 杜定友는 (1) 不完全不概括 (2) 太簡單 (3) 不合時 (4) 不合論理 (5) 無秩序 (6) 不普遍 (7) 無標準 (8) 無遠慮 (9) 無世界眼光 (10) 無科學思想, 王省存은 (1) 推崇儒道排斥異端 (2) 類次不以學術爲重 (3) 子目分析體例不純이라고 各各 그 短點을 들어 評하고 있다.

이들 諸人士들의 四庫分類法에 對한 批判中 主要한 것만을 綜合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儒家中心의 分類法에 지나지 않는다

가) 儒道崇尙에 置重한 中國圖書의 集大成을 主目的으로한 御用的인 分類法이다.

나) 釋家 道家를 排斥 또는 制限收錄하고 있다.

다) 明末 西洋에서 傳來되었다고 생각되는 基督教關係 圖書가 全然 收錄되어 있지 않다.

라) 그當時 西洋에서 流入되어 오는 科學과 文學等의 新學問을 收容할 수 없다.

2. 類(綱)目이 圖書의 多寡에 依하여 定해지고 있다.

가) 現存하는 藏書의 目錄을 作成하기 爲한 分類法에 不過하다. 따라 그類(綱)目의 詳略이 所藏圖書의 範圍와 數量에 依해서 決定되고 있다.

나) 將次 增加될 圖書에 對한 類(綱)目의 展開를 必要로하지 않는다. 따라 本分類法은 發展的이며 適應的인 條件을 具備치 못하고 있다.

3. 分類法의 組織이 非理論的이다.

가) 分類의 體系는 理論的으로 展開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곳이 있다. 例를 들면 子部內에 있어서 各類의 次序는 子部總序에서

『儒家尙矣 有文事者有武備 故次以兵家 法刑也 唐虞無臬陶 則寇賊竄宄無所禁 必不能風動時雍 故次以法家 民國之本也, 穀民之天也 改次以農家 本草經方 技術之事也, 而生死繫焉 神農黃帝 以聖人爲 天子 尙親治之 故次以醫家……』(註5)

等이라 明記하고 있는바 같이 그體系가 學術的 및 理論的인 것이 되지 못하고 다만 便宜主義的인 羅列에 不過하다.

나) 한 部門에는 그 概念이 類似하고 또 그 定義아래서 分類될 수 있는 것만을 包含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곳이 있다. 例를 들면 類書가 子部 아래 들어 있는 것 等이다.

4. 分類의 標準이 一致되어 있지 않다.

가) 分類가 同一 部門內에 있어서 體裁를 主로한 것과 內容(義理)을 主로한 것이 混合 또는 交錯되어 있다. 例를 들면 史部에 있어서 正史 編年 紀事本末 / 別史 雜史 詔令奏議類 가지는 體裁를 主로하고 傳記 史鈔 載記 時令 地理 職官 政書 目錄 史評類는 內容(義理)을 主로 하고 있다. (註6)

나) 集部에서는 別集 總集은 著者本位의 編輯形式에 依하고 있으면서 楚辭詩文評 詞曲類는 內容에 依하고 있다. (註7)

5. 讀者를 爲한 目錄인 것보다는 所藏內容을 表示하는 것이 主目的인 目錄이기 때문에 偶個 冊의 書架排列를 表示하는 分類記號가 꼭 있어야 할 必要가 없다. (註8)

가) 이 四庫의 圖書를 四部로 區別함에 있어서는 色彩가 다른 裝訂을 使用하고 있다. 卽 經部는 綠, 史部로 赤, 子部는 靑, 集部는 灰色으로 되어있고 六冊마

다 冊과 同一色의 套子가 있어 外側에 套子番號와 收藏되고있는 冊의 表題가 쓰여진 案内書가 붙어있다. (註9)

나) 따라 冊을 檢索할때는 于先 總目을 본 다음 書架의 配置圖에 따라 冊의 位置를 大略 알아내고 위의 案内書에 따라 冊을 찾는다. (註9)

上記한바와 같은 四庫全書總目的 分類法에 對한 批判은 곧 四部法에 對한 批判으로 看做되는 것이다. 中國에 있어서 이 四部法이 儒敎中心의 書籍을 다루었던 淸以前에는 分類法으로서의 要件을 具備했다고 볼수있을지는 모르지만 淸末以後 特히 現在에 있어서서는 洪水와 같이 쓰다져 나오는 새로운 學術의 文獻을 到底히 받아드릴수가 없고 따라 實用的인 分類法으로서의 具備條件을 갖추었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다시 Sayers가 言及한 實用的인 分類法으로서의 必須的인 具備條件을 土張로 檢討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人類의 온갖 知識을 總網羅치 못하고 있으며 그理論도 不充分하다.
2. 部類의 次序가 不適當하며 一般이 公認할만한 妥當性이 缺如되어 있다.
3. 事物의 陳述이 詳細치 못하다.
4. 類綱目에 充分한 伸縮性이 없고 앞으로의 世界思潮變化에 對한 適應性및 發展性이 없다.
5. 助記性이 考慮되어 있지 않다. (註10)
6. 너무나 簡單해서 索引조차 없다. (註10)

그래서 中國에 있어서서는 이러한 四庫分類法의 弊端을 補充하기 위하여 最初로 編撰된것이 孫星衍의 祠堂書目이고 그뒤를 이어 章學誠의 和州藝文略, 張之洞의 書目答問, 繆荃孫의 藝風藏書記 등의 分類法이 續出되었다. 中 張氏의 書目答問만이 四部法을 倣하여 叢書一部를 더

追加하고 있을뿐 外의것은 大膽하게 四部法을 打破하고 十部以上으로 部門을 設定하고 있다. 그러나 初期의 分類法들이라 完全치 못하였고 또 當時는 워낙 四部法이 盛行되던 餘波로 別로 普及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中國圖書分類改革의 先驅的인 役割을 한 點에 있어서는 故意義가 매우 컸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그後 現在에 이루기까지 中國에 있어서의 分類法에 對한 理論과 實際는 漸次로 向上發展되어 왔다. 이제 그 分類法使用의 動向을 簡單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註15)

### 1. 四部法에 의한 新舊圖書混合制

四部法의 舊體制를 修正增補하여 新舊圖書을 함께 다 收容하자는것으로 그代表的인것을 들면 張鑑의 南甯圖書館分類法, 江蘇省立國學圖書館分類法과 南洋中學分類法等이다. 그러나 時代가 要求하는 問題를 到底히 解決할수는 없었다. 蔣氏가 (1) 不詳盡 (2) 不該括 (3) 不合理 (4) 無遠慮라 評하드시 現代分類法으로서는 不適當하여 中國에 있어서도 極少數의 圖書館에 使用하지 않고 있다. (註16)

### 2. 二個分類法에 의한 新舊圖書併行制

舊書는 四部法, 新書는 D. D. C, 杜定友의 世界圖書分類法, 王雲五의 中外圖書統一分類法等 新體制分類法을 各各 採用하여 따로 分類하고 있다. 그러나 이 分類體制도 그다지 使用되지 않고 있는것 같다. 그理由로서 蔣氏는 (1) 標準無法規定 (2) 同類之書不能歸入一處 (3) 管理困難을 들고 있다. (註21)

### 3. 單一分類法에 의한 新舊圖書混合制

四部法을 打破하고 杜定友의 世界圖書分類法, 劉國鈞의 中國圖書分類法, 王雲

五의 中外圖書統一分類法 등의 單一新分類法을 利用하여 新舊圖書를 單一體系로 分類하고 混合收容하고 있다. 그리고 西書는 D. D. C. 等 西洋分類法을 使用하고 있다.

#### 4. 單一分類法에 依한 中外圖書 統一制 (註25)

西洋의 分類法 特히 D. D. C. 를 增改한 것 또는 이를 參酌하여 中國實情에 適合하도록 만든 王雲五, 杜定友 劉國鈞等 諸氏의 分類法을 使用하여 新舊圖書와 西書를 共히 單一分類로 統一하고 있다. 이러한 分類體制는 現在 中國에서 가장 많이 使用되고 있다.

上記한 바와 같이 自古로 四部法을 傳統的으로 主用해 왔고 또 實際問題로서 가장 古書를 많이 所有하고 있는 中國에 있어서도 이 四部法으로서는 新時代의 廣範圍에 걸쳐 刊行되는 圖書를 包括할 수 없을 뿐더러 萬一 이 四部法을 採用하면 舊書 新書 西書를 두 個乃至 세 個의 個別的인 分類法으로 整理하게 되므로 同一한 主題의 圖書를 한 곳에 모을 수 없고 따라 讀者에게는 圖書利用上 적지 않은 不便을 주게 된다 또 舊書와 新書의 限界를 規定지우는 標準이 曖昧하여 裝釘으로나 年代로서도 兩者를 劃然하게 區分하기 困難한 것을 구태여 舊書는 四部法 新書는 新分類法으로 나누어서 整理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中國에 있어서도 이 四部法을 使用하는 圖書館이 極少數일 뿐더러 新舊圖書의 單一法 適用까지도 漸次로 줄어들어서 이제는 中外圖書를 全部 單一法으로 整理하는 傾向이 짙어지고 있는 實情에 있다.

如斯한 中國圖書分類上의 發展過程은 우리 나라에서도 充分히 適用될 수 있는 條件을 具備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하나의 좋은 標本으로 삼아도 無妨할 것으로 믿는다.

註 1. 蔣元卿, 中國圖書分類之沿革 (民國 46) P. 124—26.

註 2. 姚名達, 目錄學 (民國 23), P. 31—82.

註 3. 杜定友, 圖書分類法 (1925), P. 28—29.

註 4. 王省吾, 圖書分類法導論 (2版, 民國 44), P. 89—91.

註 5. 蔣元卿, 前掲書 P. 124—25.

註 6. 王省吾, 前掲書 P. 90.  
蔣元卿, 前掲書 P. 126.

註 7. 加藤宗厚, 圖書分類法要說 (改訂版; 昭和 32), P. 71.

註 8. 上掲書, P. 72.

註 9. 譚卓垣, “清代圖書館發達史”, 西村捨也 譯, 圖書館研究 第14卷 (1941), P. 323—24.

註 10. W. C. B. Sayers, An Introdution to Libraiay Classification (Grafton: 1953), P. 22.

註 11. 許世英, 中國目錄學史 (2版; 民國 43) P. 192—95.

註 12. 蔣元卿, 前掲書 P. 129—31.

註 13. 上掲書 P. 131—35.

註 14. 上掲書 P. 135—36.

註 15. 上掲書 P. 259—64.

註 16. 中國圖書를 中心으로 하는 東洋書의 新書와 古書를 말한다.

註 17. 蔣元卿, 前掲書 P. 141—46.

註 18. 上掲書 P. 146—50.

註 19. 王省吾, 前掲書 P. 93—98.

註 20. 蔣元卿, 前掲書 P. 150—51.

註 21. 上掲書 P. 193—96.

註 22. 王雲五, 中外圖書統一分類法 (民國 44).

註 23. 蔣元卿, 前掲書 P. 187—89.

註 24. 王省吾, 前掲書 P. 107—11.

註 25. 鈴木正次 “上海圖書分類史”, 圖書館研究 第16卷 (1943) P. 74—86.

(筆者 東國大學校圖書館 司書主任)